방사선산업 진흥법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19 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허성무·김문수・박지원

김동아 · 양부남 · 이병진

박 정・박선원・서미화

송재봉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, 생명공학기술, 정보기술 등과 연계하여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, 스마트의료, 반도체, 배터리, 식품생명, 우주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성장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,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기계·장비 및 관 련 소재·부품·장비 등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산업활동 의 성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(안 제1조).
- 나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방사 선산업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다. 정부는 새로운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과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라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방사선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·경영 컨설팅, 시설이나 장비의 임대·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마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바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진흥원을 설립함(안 제15조).
- 사. 방사선사업자는 방사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방사선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 사선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
방사선산업 진흥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방사선"이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.
- 2. "방사성동위원소"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사성 동위워소를 말한다.
- 3. "방사선산업"이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, 측정 및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방사선 기반 산업활동과 방사선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소재, 살·멸균, 의료, 제약 등 분야에서 방사선 기반 산업을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방사선 이용 산업활동을 말한다.
- 4. "방사선사업자"란 방사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적절한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방사선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제2장 방사선산업의 기반 조성

- 제5조(방사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방사선산업진흥계획(이하 "진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 - 2.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과 사업화 촉진
 - 3. 방사선산업 분야 창업 및 성장 지원
 - 4. 방사선산업 관련 통계 조사 및 관리
 - 5. 방사선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및 규제 개선
 - 6. 방사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- 7. 제13조에 따른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
 - 8. 제14조에 따른 방사선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· 운영
 - 9. 그 밖에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국방부장관,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수립·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·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방사선산업 정책협의회) ① 방사선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 사업,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사선산업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방사선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수 있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사업자 또는 방사선산업 관련 단체

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・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 지원) ① 정부는 새로운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·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(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)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개발된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이용・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9조(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) ① 정부는 제8조에 따라 개발된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

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10조(방사선산업 분야 창업 및 성장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방사선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·경영 컨설팅, 시설이나 장비의 임대·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대상·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방사선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방사선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,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 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, 국제전시회 참가,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

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·방법,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4조(방사선산업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 정보체계(이하 "정보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수 있다.
 -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 - 1. 국내외 방사선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
 - 2.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

- 3. 방사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방사선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·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(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)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경우 「지능 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방사선산업진흥원 및 한국방사선산업협회의 설립

- 제15조(방사선산업진흥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 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-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방사선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분석 및 연구
- 2.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촉진
- 3. 방사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
- 4.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
- 5. 방사선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
- 6. 방사선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및 규제 개선 지원
- 7. 방사선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
- 8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⑦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진흥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 원에 금전이나 현물,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.
-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-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6조(한국방사선산업협회) ① 방사선사업자는 방사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방사선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

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사선산업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협회에 대한 인가,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장 보칙 및 벌칙

- 제17조(업무의 위탁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있다.
- 제1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진흥원 또는 협회가 아닌 자는 방사선산업진흥원, 한국방사선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1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협회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,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0조(과태료)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산업진흥원, 한국방사선

산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 · 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